



# 땅 끝 해 남 소 식

2023년 12월 15일(556호)

## HAENAM NEWS

◆ **군정목표** ◆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

◇ **군정방침** ◇

소통공감 윤리경영  
지속가능 미래농업  
서남해안 관광중심  
상생활력 균형발전  
사람중심 나눔복지

발행인: 해남군수 발행처: 기획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대표전화 061)530-5321팩스 530-5574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고시·조례·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 규칙

- ◎ 해남군 규칙 제1375호 -----2
- ◎ 해남군 규칙 제1376호 -----4

### 조례

- ◎ 해남군 조례 제3278호 -----10
- ◎ 해남군 조례 제3279호 -----22
- ◎ 해남군 조례 제3280호 -----26
- ◎ 해남군 조례 제3281호 -----41
- ◎ 해남군 조례 제3282호 -----60
- ◎ 해남군 조례 제3283호 -----66
- ◎ 해남군 조례 제3284호 -----70
- ◎ 해남군 조례 제3285호 -----74
- ◎ 해남군 조례 제3286호 -----78
- ◎ 해남군 조례 제3287호 -----84
- ◎ 해남군 조례 제3288호 -----93
- ◎ 해남군 조례 제3289호 -----103
- ◎ 해남군 조례 제3290호 -----109
- ◎ 해남군 조례 제3291호 -----114
- ◎ 해남군 조례 제3292호 -----120
- ◎ 해남군 조례 제3293호 -----133
- ◎ 해남군 조례 제3294호 -----142

⊙ 해남군 조례 제3295호 -----147

⊙ 해남군 조례 제3296호 -----150

**고시**

⊙ 해남군 고시 제193호 -----167

규 칙

제13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23. 11. 6.)에서 의결된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규칙 제1375호

붙임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1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지원기준 등) ① (생략)</p> <p>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빈집 철거 : <u>150만원</u> 이하</p> <p>2. (생략)</p>	<p>제5조(지원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u>300만원</u> -----</p> <p>2. (현행과 같음)</p>

제13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23. 11. 6.)에서 의결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규칙 제1376호

붙임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 본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요금감면 절차 등)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 감면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 략)</p> <p>7. 조례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u>제9호</u>까지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 3호서식으로 군수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 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p>	<p>제24조(요금감면 절차 등)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u>제</u> <u>10호</u>----- ----- ----- ----- -----.</p>

■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안)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수용가와와의 관계

수용가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수용가번호	구경	업종

mm

감면사유	재난지역	재난일시		재난장소		
		재난사유		수도사용량		
	공동주택 자체호별 검침부과	관 리 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기타사유	[ ]수급자 [ ]학교 [ ]수원지 인근지역					
	[ ]2자녀 이상 [ ]기타( )					

상기와 같이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5조제1항제3~제10호 및 「동시행규칙」 제24조제7호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각 감면사유별 입증서류 가. 재난지역 : 재난지역을 입증하는 서류 등 나. 공동주택자체호별검침부과 : 고용계약서 등 다. 학교 : 설립인가증 등 라.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마. 2자녀 이상 : 주민등록등본 등(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에는 미제출) 바. 수원지 인근지역(삼산면 전체, 송지면 송종마을)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등(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에는 미제출) 사. 기타 : 공익상 또는 수돗물 급수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

조례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78호

붙임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1부

##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당해 회계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군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

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군의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기금별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른 해남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 업무과장 또는 담당 사무관을 분임기금운영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실장
2. 기금운영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 각 기금운영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⑤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영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군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관 및 제19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7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이자수익 목표를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의 부속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용총칙은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군수는 기

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는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제1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군의 회계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

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해당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직전 3년간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대규모 사업 및 현안 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  
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통합기금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16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종 특별회계 재무관은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7조(예탁금의 이자)** 제18조에 따라 예탁된 여유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8조(기금의 배정)** ① 군수는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20조(통합기금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관광실장, 안전교통과장, 총무과장, 농정과장, 건설도시과장

2.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군수는 통합기금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

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담당 공무원
3. 총괄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담당 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그 밖의 이 조례에 따른 모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79호

붙임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을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팀장 으”를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료급여 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6조의2 중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을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u>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u>                      -----                      -----                      -----                      -----.</p>
<p>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u>팀장</u> 으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제1</u>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p>	<p>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                      -----                      ----- <u>공무원</u>-----.                      ② -----                      ----- <u>제1항</u>-----                      -----                      -----                      -----.</p>
<p>제5조(수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u>별지 제1호 서식</u>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날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5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u>별지 제1호서식</u>-----                      -----                      -----.</p>

③ (생략)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한다.

② (생략)

제6조의2(상환독촉)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출) ① -----  
-----  
----- 의료급여비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상환독촉)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  
-----  
-----.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  
-----  
-----  
-----.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80호

붙임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1호) 중 “한다)”를 “한다)의 출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고보조금
2. 전라남도의 보조금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기금의 용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와 같다.

② 영 제26조의4제8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5. 그 밖에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제3조의3(중전의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3(중전의 제3조의2)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한다.

제3조의5(중전의 제3조의4) 중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내”를 “군에”로,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3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18조의6”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제5조제1항 단서 중 “단,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을 “다만, 영 제26조의4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용자여부”를 “용자 여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 본문 중 “상환이전”을 “상환 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거치기간”을 “거치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을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공무원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여유자금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면제)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용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

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 “ 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 설>

<신 설>

1.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 3. (생 략)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운용 수익금
6. 국고보조금 등

<신 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전라남도의 보조금
3. ----- 한다)의 출연금 -----  
-
4. · 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 1.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2.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4.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 5.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영 제26조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
-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지원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국가로부터 대

제26조의4와 같다.

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자활사업 참여 차상위자로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0.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2.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3. 수급자 중·고 재학 자녀 교복비 지원

14. 그 밖에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영 제26조의4제8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  
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  
팅 지원

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  
시적 지원

5. 그 밖에 자활지원 또는 자활  
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  
하다고 해남군수(이하 “군  
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  
업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  
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자활기  
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 설>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단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 ⑤ (생략)

⑥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생략)

제3조의4(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제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등) <삭제>

<삭제>

① ~ ③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④ ----- 제1항 -----  
-----  
-----  
-----.

제3조의4 (현행 제3조의3과 같음)

제3조의5(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

작성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 2.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 4. 제3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 6. (생략)

제5조(융자신청등) ① 기금의 융자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읍·면장 및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군

-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  
-----.

제4조(지원대상) 군에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 4.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  
-----  
-----
- 5. 법 제18조의6 -----  
-----
- 6. (현행과 같음)

제5조(융자신청등) ① -----  
-----  
-----  
-----  
-----  
----. 다만, 영 제26조의4제5호에 따른 -----

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용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해당 기업인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용자의 금지) 용자금을 대부분은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용자금 상환이전에 재차 용자할 수 없다. 다만, 용자금의 상환 후 2년 경과시 1회에 한하여 추가 용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용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용자받은 자 및 기관은 3년 거치후 7년 동안 년1회 균등 분할상환 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② 용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

② 제1항에 따라 -----  
-----  
----- 용자 여부-----  
-----

---. <후단 삭제>

제6조(중복용자의 금지) -----  
-----  
----- 상환 이전-----  
-----.  
----- 한 차례만 -----  
-----.

제10조(용자금의 상환) ① -----  
-----  
----- 연 1회 -----  
-----  
-----.

② -----  
----- 거치 기간-----  
---. ----- 지난 -----  
-----

③ ----- 그 밖에 -----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일시상환등) 군수는 사업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용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용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4. · 5. (생략)

제12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  
-----  
-----.

④ -----  
----- 한 차례만 -----  
-----.

제11조(일시상환등)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현행과 같음)
- 2. -----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
- 3. 제7조에 따른 -----  
-----  
-----
- 4.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 ① 군수  
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  
납원을 둔다.

1. (생략)
2. 기금출납공무원과 서무업무  
담당 팀장,

② (생략)  
<신설>

제15조(감면조치등) ① 기금을 용  
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업실  
패, 고령 등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  
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지방세법의 준용) 기금을

③ ----- 제1항에 따라 -----  
-----  
-----  
-----.

제13조의2(회계공무원) ① -----  
-----  
-----.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여유자금 예치) 특별  
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  
16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5조(면제) 군수는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용자받은 자가 상환독촉을 받고  
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의  
채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  
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  
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용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따른다.

<삭 제>

<삭 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81호

붙임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수리비용의”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리비용”을 “지원대상자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로, “지원 금액”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호 및 제2호 중 “이내에서 1회당 3만원을 넘는 수리비용”을 각각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3자에 의한 보조기기의 파손·고장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⑥ 무상 A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을 “지정 수리업체를 통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면장은”을 “지정 수리업체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결정 여부”로, “알리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 완료”를 “즉시 통보하고 통보 받은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완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6호 서식”을 “6호서식”으로 한다.

④ 읍·면장은 수리가 완료된 지원대상자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u>별지 제1호 서식</u>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리업체 지정 시 <u>별지 제2호 서식</u>의 지정서를 교부한다.</p> <p>③ (생략)</p>	<p>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별지 제1호서식</u>----- ----- ----- <u>별지 제2호서식</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u>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비용</u>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수리비용 지원) ----- <u>수리비용의</u> ----- ----- -----.</p>
<p>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생략)</p> <p>② <u>수리비용</u> 지원대상자 및 지</p>	<p>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지원대상자는</u> 해남군에 주민</p>

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1회당 3만원을 넘는 수리비용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1회당 3만원을 넘는 수리비용

③·④ (생략)

<신 설>

<신 설>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자에 의한 보조기기의 파손·고장인 경우

2.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인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7조(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조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 지원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  
-----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3자에 의한 보조기기의 파손·고장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⑥ 무상 A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7조(지원절차) ① -----

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한다.

1.·2. (생략)

3.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알리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알린다.

<신설>

④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완료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

지정 수리업체를 통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② 지정 수리업체는 -----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결정 여부-----  
-----  
----- 즉시 통보하고 통보 받은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완료-----.

④ 읍·면장은 수리가 완료된 지원대상자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리내역서 및 관련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  
지 제5호 및 6호 서식에 따라  
수리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한다.

⑤ (생략)

<신설>

제10조 (생략)

-----  
-----  
----- 6호서식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수리업  
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  
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현행**

지정번호 제 호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서**

상 호 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위 업체를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개정안

지정번호 제 호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서

상 호 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위 업체를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 4. 15.> **현행**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				
장애명		장애정도	급		
수급유형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input type="checkbox"/> 수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3. 최근 장애인보장구 교부(수리)받은 사항

교부연도	종류	교부기관	수리연도	수리내용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1. 4. 15.> **현행** → **개정안 <삭제>**

연번 :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애 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정도	급	

수급유형

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보장구 유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해당 유형에 체크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직인

(○ ○ 업체 대표 ○ ○○)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1. 4. 15.> **현행**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보장구 수리 업체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여
	소재지				전화번호			
수리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번호			
청 구 내 용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 유형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 반		
	주소				장애명 및 장애정도			
보장구 수리 내역	보장구 유형	<input type="checkbox"/> 수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			비용청구금액	천원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p>「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p>								
해남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7호서식] 신 설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장애유형			장애정도		
	수급유형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				
	보조기기 유형	<input type="checkbox"/> 수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리업체				수리내용		
수리년월일				검수년월일		
수리적정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사유:    )				
검수장소						
검수사진						
<p>「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p>						
		검수자 직)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p>해남군수 귀하</p>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82호

붙임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구조물

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 또는 연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또는 농막

③ 영 제15조제7항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 기간 연장”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영 제15조제5항제8호 및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 3회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제18조제2항 중 “군수”를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명부 에서 군수”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제2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시행일 이후 최초 연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 승인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삭 제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 ⑥ (생 략)

제28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① ~ ⑤ (생 략)

<신 설>

-----  
-----  
-----  
-----  
-----.

2. --- 10미터 -----  
-----

3. --- 10미터-----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83호

붙임 해남군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 해남군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경찰서, 해남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매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남경찰서, 해남교육지

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어린이가 제1호의 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
3. 보호구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장소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
5. 보호구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

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장소

**제6조(보호구역의 공표)** ①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이유, 준수 사항, 구간별·시간대별 조치 현황,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등을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및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84호

붙임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의식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① 군수는 해남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12. 2. 5. 이전에 사용승인된 주택에 한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로 결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설치 희망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은 소방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설치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3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친족(관계 : )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계인( )				
	주택유형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다가구)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설치장소					
지원시설	<input type="checkbox"/> 소화기 : 개					
	<input type="checkbox"/>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해남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85호

붙임 해남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1부

---

## 해남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해남군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하며,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및 협의·조정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되,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86호

붙임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용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2호나목 중 “법 제31조제4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소장과 재난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를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li> </ol>	<p>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그 밖의 --</li> </ol>
<p>제3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 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li> </ol> <p>가. (생략)</p>	<p>제3조(기금의 용도)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 -----</li> </ol> <p>가. (현행과 같음)</p>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  
시하는 안전조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장 중 위원회의 정  
원 범위내에 서 위원장이 임명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  
는 재난관리팀장이 된다.

<신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 1. 2. (생략)
-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  
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소장과 재난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  
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  
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  
촉하되 민간위원은 위원  
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  
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

제9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3. (생략)
-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생략)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안전도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87호

붙임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를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해남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남군”을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

른 농산물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10.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수”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기금을 조성한다”를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계상”을 “반영”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위원회”를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단, 지원총액이 제13조 제2항”을 “다만, 지원총액이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 운용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① 기금은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을 “기금”으로,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2조) 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3조)제3호 중 “원에 의하여”를 “의사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25조) 중 “아니한”을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u></p>	<p><u>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농업의 활성화를 기하며,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의 차액 지원과 해남군 관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해남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p> <p>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p>	<p>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p> <p>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p>

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직접지불금”이란 해남군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6. ~ 9. (생략)

10.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  
-----  
-----  
-----.

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6. ~ 9. (현행과 같음)

10.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군에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을 조성한다.

② (생략)

③ 조성된 기금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④ (생략)

제5조(기금의 재원)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2. (생략)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

제8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은 가을배추, 겨울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무, 감자, 고구마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지급기준은 농산물당 1회로

----- 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조(기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반영-----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현행 제1항과 같음)

제8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

-----  
-----  
-----

-----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②·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농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 4. (생략)

제20조·제21조 (생략)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2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2. (생략)

3.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할 때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어느 하나에 -----  
-----.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제20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  
----- 한 차례만 -----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의 해촉) -----  
-----  
-----.

1.·2. (현행과 같음)

3. ---- 의사에 따라 -----  
-

제23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4조(다른 조례의 준용) -----  
----- 아니한 위원회에 관  
한 -----  
----- 따른다.

제25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88호

붙임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를 “제3조”로, “해남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을 “해남문화원”으로, “위한”을 “위한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원”이란”을 ““해남문화원”이란”으로, “법 제4조제1항에 의거”를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로, “같은 법 제4조 제3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남문화원”으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원”을 “해남문화원”으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문화원 지원”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원”을 “해남문화원”으로 한다.

제3장(제8조, 같은 조, 제9조 및 같은 조 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4장 기타”를 삭제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21조) 중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 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u>해남문화원</u>(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3조</u> ----- ----- <u>해남문화원</u>----- ----- 위 <u>한 시행에</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문화원”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u>같은 법 제4조 제3항</u>에 따라 해남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p> <p>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과</u> -----.</p> <p>1. “<u>해남문화원</u>”이란 ----- ----- -----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 <u>법 제4조제3항</u>----- -----.</p> <p>2. ----- <u>따라</u> ----- ----- ----- -----.</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책무) 해남군수(이하 “군</p>	<p>제3조(책무) -----</p>

수”라 한다)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화원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장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하여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다.

- 1. 군의 출연금
- 2. 법제16조에 의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남문화원-----  
-----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남 문화원-----  
-----  
-----  
-----.

<삭 제>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  
----- 해남문화원-----  
-----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조성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사용은 총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11조(기금관리) ①군수는 기금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삭 제>

②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서를 작성,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해남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문화예술과장 포함 군 공무원 2명, 군 의원1명(의장추천), 문화원장 추천 2인,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 3.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 제>

②정기회는 상. 하반기 1회씩, 임시회는 위원장과 위원1/3이상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1

<삭 제>

명을 두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위원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 사유가 있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 품위 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20조 (생략)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삭 제>

<삭 제>

<삭 제>

제8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9조(준용) -----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따른다.

<삭 제>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89호

붙임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를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를 “도모하고, 해남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관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란 군이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혹은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평가분석후”를 “평가분석 후”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금은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해남군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li> <li>2. ~ 7. (생략)</li> <li>8. “관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이하 “군대표 문화예술행사”)란 군이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혹은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 도모하고, 해남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관리에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li> <li>2. ~ 7. (현행과 같음)</li> <li>8. “관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란 군이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혹은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예</li> </ol>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제7조(분석평가) ① (생략)

② 제1항 평가분석후 군민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에 자문하고 그 의견을 받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문화예술위원회 설치)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4조(준용) 위원의 위촉해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그 외 운영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 ③ (생략)

④ 기금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27년까지로 한다.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④ (생략)

술행사를 말한다.

제7조(분석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평가분석 후 -----  
-----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예술위원회 설치) ---  
-----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4조(준용) -----  
-----  
-----  
----- 따른다.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기금은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90호

붙임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을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회계”를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3조의3(여유자금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해남군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원 지방 산업단지의 토지 및 어업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남군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 -----.</p>
<p>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상업무 위탁자인 대한조선(주)에서 위·수탁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p>	<p>제2조(세입)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 -----.</p>
<p>1. ~ 5. (생략) &lt;신설&gt;</p>	<p>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p>
<p>&lt;신설&gt;</p>	<p>제3조의3(여유자금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p>
<p>제4조(존속기한) (생략)</p>	<p>제4조(존속기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신 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남군 지방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  
회 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해남군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91호

붙임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부

##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를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로, “설치하고,”를 “설치하고, 그”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 중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를 “별도의 계좌로 구분하고,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을 “(위원회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금결산보고서안

제11조제1항 중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을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6조의2에 따라 <u>광고물 등의 정비</u>를 통해 <u>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u> 위하여 <u>옥외광고발전기금</u>을 <u>설치</u>하고, <u>관리 및 운용</u>에 관하여 <u>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6조의2----- <u>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u>을 ----- <u>설치</u>하고, <u>그</u> -----.</p>
<p>제2조(<u>기금의 조성</u>) (생략)</p>	<p>제2조(<u>기금의 재원</u>) (현행과 같음)</p>
<p>제3조(<u>기금의 용도</u>)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 6. (생략)</p> <p>&lt;신설&gt;</p> <p>7.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u>기금의 용도</u>) ①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u>기금의 관리·운용</u>) ①·② (생략)</p> <p>③ <u>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u>하고, <u>별도의 계좌</u>를 설치하여 관리한다.</p>	<p>제4조(<u>기금의 관리·운용</u>)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u>별도의 계좌</u>로 구분하고, 「<u>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u></p>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기금 -----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한  
다.

제6조(위원회 기능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기금결산보고서 안

3.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  
-----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92호

붙임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

##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태어난 신생아 또는 입양아를 양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된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및 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직계혈족 또는 부모의 형제·자매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 가정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5.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이란 신생아 건강

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출산맘 건강회복 프로젝트”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자(산모)에게 관내 운동시설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7. “산모·아기사랑 택배 지원”이란 양육비 지원 출산 가정에게 출산 축하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8. “출산맘 행복상자 지원”이란 관내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에게 출산 후, 산모와 출생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9. “산모 건강회복비 지원”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자(산모)에게 산후조리를 위한 건강회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 시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2장 신생아 양육비 및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제5조(업무 관장)** 양육비 및 건강보험 지원(이하 “양육비 등”이라 한다) 관

련 업무는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6조(지원 대상)** ① 양육비의 지원 범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미혼모 또는 미혼부 출생아, 입양아를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출산 전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전입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부동산 계약서 등) 및 전입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등)를 제출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전출지에서 양육비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중복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에는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면서 군에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4. 24개월 미만의 영아와 부 또는 모가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에 전입 시

점부터 영아가 출생순위별 분할금 최대 지급 개월 수가 되는 시점까지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 지원 범위는 양육비 지원 대상 중 두 번째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 또는 전입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급액)** 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한다.

② 양육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며, 현금 또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첫째아 32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씩 18회 지급)
2. 둘째아 37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15만원씩 18회 지급)
3. 셋째아 620만원(일시금 140만원, 매월 20만원씩 24회 지급)
4. 넷째아 이상 740만원(일시금 140만원, 매월 25만원씩 24회 지급)

③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일시금을 제외하고, 전입 시점부터의 잔여 분할금을 매월 지급한다.

④ 건강보험료는 1명당 월 3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0년간 보장을 받는다.

⑤ 건강보험의 만기환급금은 보험기관에서 해당 자녀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단, 보호자에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① 양육비 등 대상자의 보호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

이라 한다)에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입한 경우는 전입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절차)** ① 읍·면장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출생 순위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새울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부서 지정 후 이송한다. 단, 행정정보공통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지급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건강보험 지원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설계 지원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에 따라 청구한 다음 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 양육비 지급 및 보험 가입 결과를 전화, 공문서, 인터넷, FAX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달부터 양육비와 건강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자녀 또는 부모 모두 전출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

지 않은 경우

2.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의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다음 달 보험료부터 보호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호자에게 승계한다. 다만, 보호자가 보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따른 해약 환급금은 군 금고에 환수 조치한다.

### 제3장 출산장려 시책사업

제11조(임산부·영유아 지원) ① 군수는 관내 임산부·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임산부·영유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2. 임신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 지원
3. 임신부 영양 지원
4.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6.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지원
7. 임산부·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8. 임신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
9. “임산부의 날” 행사
10. 그 밖에 군수가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 관리 임신부에게 가사관리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출산 지원)** ① 군수는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출산 지원 사업 실시할 수 있다.

1. 난임가구 의료비 지원
2. 산모·아기사랑 택배 지원
3. 기저귀 구입비 지원
4. 출산맘 행복상자 지원
5. 출산맘 건강회복 프로젝트
6. 분만 의료비 지원
7. 산모 건강회복비 지원
8. 출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
9.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10. 그 밖에 군수가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임가구 의료비 지원”은 국가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 금액 등 확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기저귀 구입비 지원 사업”은 부 또는 모가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이루고 있는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게 지원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라 “출산맘 건강회복 프로젝트”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과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후 3개월부터 3년 이내의 출

산 여성에게 지원한다.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분만 의료비 지원”은 산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경우에 지원한다.

⑥ 제1항제7호에 따라 “산모 건강회복비 지원”은 출산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지원한다. 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중복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4장 보칙

**제13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출산 통합처리 신청 접수 대장(별지 제1호서식), 처리 부서는 양육비 지원 현황 관리 대장(별지 제2호서식)과 건강보험료 지원현황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면장은 양육비 등 전출, 사망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내 전출 시에는 전입지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전부개정)

양육비 지원현황 관리 대장

연번	보 호 자(부 또는 모)			지급내역			신 생 아			지급현황					비 고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성명	출생일	출생 순위	금회 지급액	분할횳 수	지급 횳수	잔여횳 수	최초 지급일	

[별지 제3호서식](전부개정)

건강보험료 지원현황 관리 대장

연번	보호자(부 또는 모)			신 생 아			보험 현황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계약일자	보험료	회차	지급액	보험기관	

[별지 제4호서식](전부개정)

양육비 등 변동사항 관리 대장

연번	보호자			대상 아동		변동사항			환수 대상 여부	비고
	이름	주소	관계	이름	생년월일	변동항목 (양육비 또는 건강보험)	변동 일시	변동 사유		
1	김보건		부	김행정	2022-11-30	양육비	2023-01-30	전출 (관외)	여	
2			모		2022-12-01	건강보험		전출 (관내)	부	
3										
4										

※ 변동사유: 전출, 사망 등 기재하되 전출자는 비고란에 전출지 상세주소, 전출일 기재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93호

붙임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귀촌인 및 귀향인의 안정적인 해남군 정착을 유도하고 해남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군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제1호 외의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귀향인”이란 군 외의 지역에서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10년 이상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 나.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제3조(귀농어업인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귀촌인·귀향인(이하 “귀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등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들의 유치, 홍보, 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등 자격과 지원 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등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귀농어업인들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등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어업인등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귀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착 정보제공 사업
2. 농어업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 사업
3.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사업
4. 귀농어업인들의 집 운영 사업
5. 귀농어업인등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사업
6.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7.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지원대상의 연령은 19세 이상 65세 이하 인 사람으로 한다.

③ 귀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기준, 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의 지원 기준,

신청절차, 지원결정 여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 회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와 농가주택 수리비 등 보상금과 재료비 성격의 지원은 제외한다.

1. 귀농어·귀촌인이 보조나 용자를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이나 용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6조(위원회 설치)** 귀농어업인등 유치 및 지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어업인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어업인등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어업인등 유치 지원 홍보
3. 귀농어업인등의 자격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및 심의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래공동체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유통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어업 경영인 연합회 대표
2.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3. 그 밖에 귀농어업인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전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귀농어업인등 신고)** ① 귀농어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고서는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귀농어업인등 중 세대주가 신고한다.

**제13조(귀농어업인등 상담장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에 귀농어업인등 상담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귀농어·귀촌·귀향인 상담 장소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4조(귀농어업인등 상담장소의 기능)** 귀농어업인등 상담장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등에 대한 자문·정보제공·고충처리·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어업인등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어업인등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15조(귀농어업인등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귀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체류형 지원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귀농어업인등 예정자 및 귀농어업인등 중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교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입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입교자는 소정의 보증금, 교육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난방·상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군수는 체류형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농어업 관련 대학 등을 통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의사항은 귀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은 그에 해당하는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귀농어·귀촌인 지원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

레 시행 당시 종전의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귀농어·귀촌인 지원 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귀농어업인등 지원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귀농어·귀촌인 지원 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귀농어업인등 지원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 귀농어업인 [ ] 귀촌인 [ ] 귀향인 신고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남/여)	
	거 주 지	(전)		
		(현)	주 택	유·무
	가족사항			
	연 락 처		휴 대 폰	
귀 농 어 업 인 경 영 현 황	영농·영어분야 (작목)	소유농지(임대농지) (어업권 등 포함)	소유 농어업 기계 등	장기 영농·영어계획 (영농인력 등)
	※ 장기적인 영농·영어계획이 있을 경우 별첨			
이주정착 계 획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 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94호

붙임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남군”을 “해남군(이하 “군”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해남군”을 “군”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군수”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협회의 업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장”을 “부서장”으로, “팀장”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입금원으로 구성한다”를 “수입금”으로 한다.

제13조 중 “업무담당과장으로”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로 한다.

제16조 중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의한  
다”를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체육진흥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란 <u>해남군</u>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u>해남군(이하 “군” 라 한다)</u>-----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p> <p>1. <u>해남군</u>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시행</p> <p>2. · 3. (생략)</p>	<p>제3조(기능) ----- -----.</p> <p>1. <u>군</u> -----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구성) ① (생략)</p> <p>② 회장은 <u>군수</u>가 되고 부회장은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p> <p>③ (생략)</p>	<p>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회장등의 직무) ① 회장은 <u>회무를 총괄</u>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p> <p>② (생략)</p>	<p>제6조(회장등의 직무) ① ----- <u>협회의의 업무</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간사등) ① 협의회사무</p>	<p>제8조(간사등) ① -----</p>

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  
기 각 1명씩을 두며, 간사는 업  
무를 담당하는 소장이 되고 서  
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생략)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생략)

2. 그 밖의 수입금원으로 구성  
한다

② ~ ④ (생략)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의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  
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업  
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6급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기금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  
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  
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  
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

-----  
-----

- 부서장-----  
----- 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수입금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의지정) -  
-----  
----- 업무담당 부  
서장으로-----  
-----.

제16조(준용) -----  
-----  
----- 「해남군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  
-----  
-----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8.)에서  
의결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95호

붙임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삼산면 전체 수용가와 송지면 송종마을 수용가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30 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제5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은 감면하지 않는다.</p> <p>1. ~ 8. (생략)</p> <p><u>&lt;신설&gt;</u></p> <p>9. (생략)</p> <p>② (생략)</p> <p>제50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p>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삼산면 전체 수용가와 송지면 송종마을 수용가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0조(권한의 위임) (현행 제1항과 같음)</p>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3. 11. 22.)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96호

붙임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소속 지방의회”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로, “관장하는”을 “업무를 관장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를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이”를 “직무관련자가”로 한다.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제11조제4항 중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를 “특별히”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의원”을 “공직자등”으로, “말한다) :”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본문 중 “경조사비 :”를 “경조사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본문 중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을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로, “그”를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은 10만원”을 “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별표 1의 비고를 가목부터 마목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을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의회명)의원 행동강령”을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신고자 중 “○○○장”을 “해남군의회의회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p>1.·2. (생략)</p> <p>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p>	<p>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4. ----- ----- 소속 지방 의회----- ----- -----</p>

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이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생략)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간·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  
-----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  
----- 업무를 관장하는 -----  
-----

다. -----  
-----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  
-----  
-----

5. ----- 직무관련자가 -----  
-----  
-----  
-----  
-----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특별히 -----  
-----  
-----  
-----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항 -----  
-----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1] <현 행>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안>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

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개정 2020. 6. 1.> <현행>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개정 2020. 6. 1.> <개정안>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명	직위	정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	--	--	--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 관련) <현 행>

###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 관련) <개 정 안>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고 시

해남군 고시 제2023 - 193호

## 해남군 군계획시설(제2스포츠타운)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1223-6번지일원에 해남군 군계획시설(제2스포츠타운)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23. 12. 14.

### 해 남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1223-6번지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3.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 87,767㎡
  -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시설용지	시설용지		녹지및기타 용지
	계	소계	체육시설 기반시설	
면적	87,767	71,412	37,106 15,447	35,214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준공예정일 : 2025. 6.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7.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스포츠사업단(☎061-530-5516) 및 건설도시과(☎061-530-5445)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합계				88,682.1	87,767						
1	삼산면 삼평리	190-4	답	982.0	982.0	해남군					
2	삼산면 삼평리	192-1	도로	3.0	3.0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3	삼산면 삼평리	192-4	답	291.0	291.0	해남군					
4	삼산면 삼평리	250-3	전	570.0	570.0	해남군					
5	삼산면 삼평리	250-5	구	53.0	53.0	한국농어촌공사					
6	삼산면 삼평리	250-9	전	790.0	790.0	해남군					
7	삼산면 삼평리	1051-13	구	811.0	811.0	국(농수산부)					
8	삼산면 삼평리	1222-4	답	2,878.1	2,878.1	해남군					
9	삼산면 삼평리	1222-5	답	2,873.1	2,873.1	해남군					
10	삼산면 삼평리	1222-6	답	806.5	806.5	해남군					
11	삼산면 삼평리	1222-7	답	3,587.7	3,587.7	해남군					
12	삼산면 삼평리	1222-8	답	1,567.2	1,567.2	해남군					
13	삼산면 삼평리	1222-9	답	1,509.4	1,509.4	해남군					
14	삼산면 삼평리	1222-10	답	1,246.5	1,246.5	해남군					
15	삼산면 삼평리	1222-11	구	939.3	662.9	한국농어촌공사					
16	삼산면 삼평리	1222-12	도로	2,109.1	1,470.4	국(기획재정부)					
17	삼산면 삼평리	1223-4	답	3,142.4	3,142.4	해남군					
18	삼산면 삼평리	1223-5	답	3,269.2	3,269.2	해남군					
19	삼산면 삼평리	1223-6	답	3,440.6	3,440.6	해남군					
20	삼산면 삼평리	1223-7	답	1,573.9	1,573.9	해남군					
21	삼산면 삼평리	1223-18	구	742.8	742.8	한국농어촌공사					
22	삼산면 삼평리	1224-1	답	4,095.6	4,095.6	해남군					
23	삼산면 삼평리	1224-2	답	1,038.0	1,038.0	해남군					
24	삼산면 삼평리	1224-3	답	3,724.4	3,724.4	해남군					
25	삼산면 삼평리	1224-4	답	2,422.2	2,422.2	해남군					

26	삼평산면 산활리	1224-5	구	442.1	442.1	한국농어촌공사					
27	삼평산면 산활리	1224-7	구	676.5	676.5	한국농어촌공사					
28	삼평산면 산활리	1225-1	답	2,534.1	2,534.1	해남군					
29	삼평산면 산활리	1225-2	답	1,124.1	1,124.1	해남군					
30	삼평산면 산활리	1225-3	답	2,683.0	2,683.0	해남군					
31	삼평산면 산활리	1225-4	답	2,503.5	2,503.5	해남군					
32	삼평산면 산활리	1225-5	답	3,663.5	3,663.5	해남군					
33	삼평산면 산활리	1225-6	도로	3,491.7	3,491.7	국(기획재정부)					
34	삼평산면 산활리	1225-7	구	3,468.0	3,468.0	한국농어촌공사					
35	삼평산면 산활리	1226-1	답	2,785.4	2,785.4	해남군					
36	삼평산면 산활리	1226-2	답	2,651.3	2,651.3	해남군					1/3지 분
						허성욱	진도군 진도면 동외리 1183				1/3지 분
						허승우	진도군 진도면 동외리 1166				1/3지 분
37	삼평산면 산활리	1226-3	답	6,550.3	6,550.3	해남군					
38	삼평산면 산활리	1226-4	답	6,257.3	6,257.3	해남군					
39	삼평산면 산활리	1226-5	구	269.6	269.6	한국농어촌공사					
40	삼평산면 산활리	1226-8	구	381.6	381.6	한국농어촌공사					
41	삼평산면 산활리	1226-9	답	2,212.1	2,212.1	해남군					
42	삼평산면 산활리	1226-10	도로	54.7	54.7	전라남도					
43	삼평산면 산활리	1226-11	도로	202.3	202.3	전라남도					
44	삼평산면 산활리	산124-23	구	241.0	241.0	한국농어촌공사					
45	삼평산면 산활리	산129-3	임	397.0	397.0	국(기획재정부)					
46	삼평산면 산활리	산129-6	구	925.0	925.0	한국농어촌공사					
47	삼평산면 산활리	산129-7	구	141.0	141.0	한국농어촌공사					
48	삼평산면 산활리	산145-3	임	298.0	298.0	해남군					
49	삼평산면 산활리	산145-7	임	263.0	263.0	김재형	나주군 영산포구 삼영리 252				